



2020년도 신규사업 지원계획 안내



전남지역사업평가단
JEONNAM INSTITUTE FOR REGIONAL PROGRAM EVALUATION

CONTENTS

I. 사업별 지원계획

1. 지역특화산업+ 지역주력산업육성(R&D)
2. 지역특화산업+ 지역스타기업육성(R&D)

II. 공통사항

1. 사업비부담비율
2. 기술료징수 및 성과활용기간
3. 유의사항 및 사전제외
4. 평가 및 신청방법

I. 사업별 지원계획

1. 지역특화산업+ 지역주력산업육성(R&D)
2. 지역특화산업+ 지역스타기업육성(R&D)

I

사업지원 계획

1. 지역특화산업+ 지역주력산업육성(R&D)

1_1. 사업개요

사업 개요

사업 명

지역특화산업+ 지역주력산업육성(R&D)

사업목적

전남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전남 지역내 소재한 중소기업이 주관하며, 주력산업분야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 과제

사업내용

전남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 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I

사업지원 계획

1. 지역특화산업+ 지역주력산업육성(R&D)

1_2. 지원 개요

구분	세부내용
지원규모 및 한도	66.69억원(국비 58.87억원, 지방비 7.82억원) / 연 2억원 내외
지원기간 및 지원 한도	최대 21개월 이내 -다년과제 지원기간 : '20.04.~'21.12.(21개월) -단년과제 지원기간 : '20.04.~'21.03.(12개월)
공모 방식(분야)	자유공모(바이오헬스케어소재, 에너지신산업, 첨단운송기기부품, 청색청정환경 ▶ 택1)
추진체계	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협약방식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징수(기술전문기업은 제외)

의무조건

- 연평균 국비(지방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필수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인정, '고용 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평가에서 "보통"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ex) 국비(지방비) 2억 1천만원 지원 -> 신규채용 2명 의무

I

사업지원 계획

1. 지역특화산업+ 지역주력산업육성(R&D)

참고) 전남주력산업 유망품목 및 산업분류코드(KSIC)

-산업별 유망품목

[주력산업1]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추진전략: 지역의 친환경 생물자원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업성이 우수한 헬스케어용 고기능성 소재 및 응용제품 개발과 품질·생산 경쟁력 강화 중점지원

유망품목: (1)건강기능성 식품 소재, (2)천연물 기반 의약품 소재, (3)천연 유기농 향노화 화장품 소재, (4)의료용 생체 적합성 소재

[주력산업2] 에너지신산업

추진전략: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기술개발 추진 및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및 규제 자유특구 사업과 연계한 기업 제안형 과제 발굴

유망품목: (1)에너지 ICT, (2)에너지저장설비, (3)지능형 전력기자재 / 장치, (4)재생에너지설비

[주력산업3] 첨단운송기기부품

추진전략: 연속적인 기술·제품 개발지원이 가능한 연계 R&D 지원을 통해 선도기업과 예비·잠재기업간의 협력관계 구축

유망품목: (1)세이프티 쉘드 기술, (2)배터리 교환 시스템, (3)센서, 보안, 딥러닝, 데이터 등 시스템 및 부품, (4)공공 및 산업용 무인기 제작 및 정비

[주력산업4] 청색 및 청정환경

추진전략: 지역 혁신기관 연계 선도기술 확보를 통한 시장 선점 및 기계, 소재, 부품, 시스템, 제품 중심 융복합 신기술 개발 지원

유망품목: (1)자연모사 화장품 피부전달기술 및 소재, (2)자연모사 기술기반 의료기기, (3)자연모사 자원순환 시스템, (4)자연모사 병해충 진단·방제기계·소재

I

사업지원 계획

1. 지역특화산업+ 지역주력산업육성(R&D)

참고) 전남주력산업 유망품목 및 산업분류코드(KSIC)

-KSIC코드 및 세분류업종(1)

[주력산업1] 바이오헬스케어소재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22 생물 살균, 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그 외 20312, 20321, 27309, 10121, 10211, 10221,
10220, 10743, 10792, 10212, 10309, 72911,
10793

[주력산업2] 에너지신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4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21 측량업
그 외 42311, 46432, 46510, 26519, 27214, 29173, 42312

I

사업지원 계획

1. 지역특화산업+ 지역주력산업육성(R&D)

참고) 전남주력산업 유망품목 및 산업분류코드(KSIC)

-KSIC코드 및 세분류업종(2)

[주력산업3] 첨단운송기기부품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929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부품 전기장치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 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부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39 그외 기타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주력산업4] 청색 및 청정환경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1399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0322 생물 살균, 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약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약품 기기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그 외 20423, 20499, 13219, 20111, 20112, 27193,
27309, 29150, 20131, 20132, 20202, 20321,
20411, 20413, 20421, 20491, 20493, 27191,
27192

I

사업지원 계획

1. 지역특화산업+ 지역주력산업육성(R&D)

1_3. 신청자격 및 추진체계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

참여기관 전남 또는 타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

추진체계 중소기업 주관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주관기관 : 전남지역 주력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 과제 수행

-참여기관 : 주관기업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수행

I

사업지원 계획

1. 지역특화산업+ 지역주력산업육성(R&D)

1_4. 평가위원회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배점)	평가지표(안)
기술성	○ 기술개발 개요	○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 기술개발 내용이 기존 개발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 기술개발이 주력산업별 특성화 추진전략과 부합하는가?
	○ 목표 및 추진내용	○ 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 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성	○ 사업화 계획	○ 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 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 매출효과	○ 매출(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매출신장이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가? ○ 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경영능력	○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 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참여기관별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 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 사전준비 및 능력	○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 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비 편성	○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일자리평가	○ 일자리의 양	○ 고용증가(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 일자리의 질	○ 성과공유 및 근로환경(미래성과공유 협약, 성과급 지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운영 등)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출되며,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

사업지원 계획

1. 지역특화산업+ 지역주력산업육성(R&D)

1_5. 유의 사항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평가지표 적용(30% 반영)
- 연평균 국비(지방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필수
고용 의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시설/기자재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 편성 시 감점**

I. 사업별 지원계획

1. 지역특화산업+ 지역주력산업육성(R&D)
2. 지역특화산업+ 지역스타기업육성(R&D)

2. 지역특화산업+ 지역스타기업육성(R&D)

2_1. 사업개요

사업 개요

사업 명

지역특화산업+ 지역스타기업육성(R&D)

사업목적

지역의 우수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통해 지역 대표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업내용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최근 3년 매출액(50~400억원 내외) 및 자체 특성화 기준 총족기업을 지자체가 지정

I

사업지원 계획

2. 지역특화산업+ 지역스타기업육성(R&D)

2_2. 지원 개요

구분	세부내용		
지원규모 및 한도	32.59억원 (국비 19.55억원, 지방비 13.04억원) / 연2억원 내외		
지원기간	'19년 지정스타기업	단년 12개월 또는 다년 21개월	* (단년) 2020.04 - 2021.03 (12개월)
	'18년 지정스타기업	단년 12개월	(다년) (1차년도) 2020.04 - 2020.12 (9개월) (2차년도) 2021.01 - 2021.12 (12개월)
공모 방식 (공모분야)	자유공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에너지신산업, 첨단운송기기부품, 청색청정환경, 기타산업군 ▶ 택1)		
추진체계	지역 스타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협약방식	일괄 협약		
기술료	징수(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의무조건

- 연평균 국비(지방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 계획 제출 필수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인정, '고용 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평가에서 "보통"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ex) 국비(지방비) 2억 1천만원 지원 -> 신규채용 2명 의무

I

사업지원 계획

2. 지역특화산업+ 지역스타기업육성(R&D)

참고) 전남스타기업 현황

-2019년도 지정(16개사)

번호	기업명
1	(주)청진
2	(주)엠티에스코리아
3	보성포리테크(주)
4	해표산업(주)
5	(주)명품
6	(주)디엠티
7	에스엠소프트웨어(주)
8	에스엠코리아(주)
9	어업회사법인 별교꼬막(주)
10	(주)조은데코
11	(주)하나스틸
12	아즈텍(주)
13	(주)짱죽
14	(주)정우엔지니어링
15	나산프라스틱(주)
16	(유)블루에스피

-2018년도 지정(15개사)

번호	기업명
1	(주)에코레이
2	원광전력(주)
3	(주)대한엔지니어링
4	(주)기성
5	(주)비온시이노베이터
6	(주)SKD HI-TEC
7	주식회사 지알켄
8	(주)유니텍솔루션
9	주식회사 코인즈
10	(주)죽암엠앤씨
11	(주)새하정보시스템
12	(주)신호엔지니어링
13	(주)유에너지
14	(주)청담은
15	(주)네모이엔지

※ 최근 3년 매출액(50~400억원 내외) 및 자체 특성화 기준 충족기업 지정

I

사업지원 계획

2. 지역특화산업+ 지역스타기업육성(R&D)

2_3. 신청자격

주관기관 지자체 주도로 특성화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지역스타기업*

※ 최근 3년 매출액(50~400억원 내외) 및 자체 특성화 기준 충족기업 지정

참여기관 전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 중견기업에 한하며,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기술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이 참여기관일 경우, 민간부담금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공고 및 발표자료 참고

추진체계 지역스타기업 주관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지역스타기업으로서 신제품 상용화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참여기관 :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

I

사업지원 계획

2. 지역특화산업+ 지역스타기업육성(R&D)

2_4. 평가위원회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평가지표(안)
필요성	지원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한 기술개발과제가 기업성장전담상 필요한 과제인가? ○ 동 사업지원을 통해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기술성	개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 개발 내용이 기존 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목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한 과제목표는 세계최고 수준 대비 동등 또는 우수한가? ○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 가능한가? ○ 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성	사업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 예측하는 등 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 개발결과와 사업화·글로벌시장 진출 계획이 구체적인가?
	매출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지역 발전효과	일자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 성과공유 및 근로환경
	산업생태계 중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품구조 및 기술개발 내용을 고려했을 때, 하청·납품업체들과의 동반성장효과가 기대되는가? ○ 향후 거래관계 핵심기업으로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가? * "거래관계 핵심기업": 협력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및 부품·서비스등을 조달하여 시장(또는 완제품 대기업) 등과 직접 거래하는 중심기업
경영 능력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관 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 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참여연구원이 구성 및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 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사업비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자동 산출되며,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

사업지원 계획

2. 지역특화산업+ 지역스타기업육성(R&D)

2_5. 유의사항

-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기간**(단년 또는 다년) 및 **일부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계상해야함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평가지표 적용(30% 반영)
- 사업계획서 접수시, 비R&D 지원 및 전담PM 을 통해 수립된 **기업성장전략 자료 제출** 필수
- **고용 의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경우,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비 비목 일부 개편**
 - * 기존의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로 분리 운영되던 비목을 ‘연구활동비’로 통합
 - * 기존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를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로 분리
 - * 비목별 계상기준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참조

Ⅱ. 공통 사항

1. 사업비부담비율
2. 기술료징수 및 성과활용기간
3. 유의사항 및 사전제외
4. 평가 및 신청방법

II

공통 사항

1. 사업비 분담 비율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국비 또는 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주관 또는 참여)	해당기업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3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 시 부담	

적용 예시

구분	국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해당기업 총 사업비
			현금	현물	
중소기업	100,000,000원	5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150,000,000원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기술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민간부담금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II

공통 사항

2.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기간

기술료 징수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 영리기관 (주관·참여)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징수 방식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적용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정률기술료	최대 징수한도
중소기업	출연금의 1%	매출액 기준산정	출연금의 20%

-(착수기본료)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정률기술료) 매출액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또는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간 중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납부

성과활용기간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 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 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 종료후 다음해부터 2년 또는 3년후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II

공통 사항

3. 유의사항 및 사전제외

3_1. 유의사항 (1)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비 비목 일부 개편

- * 기존의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로 분리 운영되던 비목을 '연구활동비'로 통합
- * 기존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를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로 분리
- * 비목별 계상기준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인건비는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계상하여야 함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

-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이전 채용인력 인정)
- * 상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의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초기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내에 사업공고 된 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 소속 연구원 대한 인건비

상기 요건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서만 집행 가능

II

공통 사항

3. 유의사항 및 사전제외

3_1. 유의사항 (2)

-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 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고시 비율 한도까지 현금 계상 가능하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 현금계상 불가(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
- ❑ 간접비 내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별도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요령’참고)
 -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II

공통 사항

3. 유의사항 및 사전제외

3_2. 사전 제외

- ❑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유사·중복성**이 확인될 경우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신청 전 확인 필수**
 - *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보고서 제출, 정산금·환수금·기술료 납부 등)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의 경우, **해당자변경 필요**
- ❑ 현재 **총괄책임자가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신청 전 확인 필수**
 - * **참여연구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필요
- ❑ 수행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수행 중인 과제 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신청 전 확인 필수**
 -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중소기업부 소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 협력기술 개발의 참여기업으로 참여 중인 경우엔 수행과제수로 계상함)
 - *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업계획서 등 양식 및 관련 규정'**참조
-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3>의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II

공통 사항

4. 평가 및 신청방법

4_1. 평가방법 및 일정

평가 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 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발표 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향후 평가일정은 달라질 수 있음
- 발표 **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 결정하되, 별도의 PPT자료 작성 지양

절차 및 일정 (지역특화산업+ 지역주역산업육성 · 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

01. 지원공고

2020. 1.31.

전남평가단: <http://jn.irpe.or.kr/>
KIAT : [http:// www.kiat.or.kr](http://www.kiat.or.kr)

02. 사업계획서 접수

온라인 2.20.~3.9. 오프라인 2.21.~3.10.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오프라인접수처 : 전남지역사업평가단 [\(나주혁신도시\)](#)

03. 신규평가

실사 3월 중 평가 3월 말

실사: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주관기관 현장방문 등
평가: 전남평가단에서 진행

04.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4월 중

지원 대상과제 : 사업계획서 수정

06. 협약체결 및 사업비자금

4월 말

협약: 전자협약 실시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II

공통 사항

4. 평가 및 신청방법

4_2.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문의전화) : <http://www.smtech.go.kr>(국번없이 1357)
 - *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접수시작부터 최종제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 가능)
 -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해 20시까지 추가 제출가능
 -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 내 제출 미완료 과제는 서류 방문제출 불가
 -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전남지역사업평가단(전남 나주시 그린로 370 1층)
 - * 우편, 택배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은 불가능,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타문의 전남지역사업평가단(061-339-9721~25)

전남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다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지역사업평가단
JEONNAM INSTITUTE FOR REGIONAL PROGRAM EVALUATION
